

# 학생연구자 내부운영 지침

제정 2020.02.29

개정 2021.07.0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교“라 함)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에 있는 자

제3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의무)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본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 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본교 『대학원 학생정원 및 학생조교 운영세칙』에 따라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3 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본교 『연구비 관리지침』 제7조(연구비 편성)를 따른다.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본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제 4 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16조(통합관리계정 설정) 본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④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본교는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체점검) 본교는 동 지침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보장) 안전 보장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따른다.

제23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

용하여서는 안되며, 본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고충·상담 창구운영)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처벌·제재)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지침을 위반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감사실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 제 6장 기타

제27조(기타)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매뉴얼」을 따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